

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·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15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8. 6. 12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(2006. 9. 27)되고, 「하수도법」과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분리 제정(2006. 9. 27), 시행(2007. 9. 28)됨에 따라 「하수도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(안 제2조)
- 나. 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(안 제3조)
- 다.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(안 제4조)
- 라. 수수료 부과·징수(안 제5조)
- 마. 분뇨처리 수수료 부담(안 제6조)
- 바.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등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 제41조, 제47조, 제57조,
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8. 5. 15 ~ 6. 4(20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있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·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하수도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오수·분뇨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)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(이하 “처리시설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특성과 개별 정화조 등의 청소 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의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3조(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) ① 구청장은 「하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·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(이하 “대행업자”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·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대행구역,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
2. 수집·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, 형식별 대수(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).
3. 사무소의 소재지와 차고 확보 사항
4. 대행업자의 준수사항
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③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,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) ①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, 청소이행기한, 시설용량,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3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 부과·징수) ① 분뇨의 수집·운반과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·징수한다.

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·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·징수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거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.

제6조(분뇨처리 수수료 부담) ① 분뇨처리 수수료는 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, 그 요금은 「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)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대행징수 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수료 지원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2.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
3.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
4.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행정위탁) 구청장은 타 시·군·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·운반 또는 청소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, 절차,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분뇨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(제5조 관련)

구 분	부과기준	수 수 료	적 용 기 준
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	10ℓ	3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에 따른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. · 배출자로부터 수집·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.
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수수료	기본(0.75m ³)	16,5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에 따른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. · 청소한 오니(오수포함)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. · 요금 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.
	초과(0.1m ³ 당)	1,200원	

관계법령

「하수도법」

제41조(분뇨처리 의무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오지·벽지 등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·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(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스스로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, 스스로 수집·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·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·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·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7조(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준수사항) ① 분뇨수집·운반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② 분뇨수집·운반업자(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)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·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57조(비용부담의 원칙)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.

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

제33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)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,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2.28>

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「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,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

가.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: 6개월마다 1회 이상

나.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: 연 1회 이상

2.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. 다만,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.

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(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)

나. 「식품위생법」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{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(주로 다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)은 제외한다}

다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

3.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,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

4.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·폐업,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.

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

2.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